

경산시 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 협약서

경산시의 경북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 운영에 대하여 경산시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장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의 목적은 경산시의 ‘청년예비창업지원사업’에 대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“갑”과 “을”간의 권리·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협약기간) 협약기간은 2019년 3월 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3조(협조 및 의무) 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지도·감독 하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붙임 「경산시의 사업계획서」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관련서류와 장비를 비치하고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

- 인력관리 및 근무상황
 - 상담 및 근무일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
 -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
- ② 운영기관의 장은 창업활동 분위기 조성 및 청년창업자간 경쟁심 유발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중간평가(분기별)를 실시한다.
- ③ “을”은 사업수행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사업기간 1/2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“갑”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운영현황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협약기간 동안 청년창업자의 사업화지원 성공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 대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,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·창업교육 등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- ⑤ 협약사무의 수행과정에서 인지된 일체의 기밀을 “갑”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조(위탁금의 지급 및 정산) ① “을”에 대한 위탁금은 금1억1천만 원(₩110,000,000)이며, “을”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(보조)한다.

② “을”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금 집행내역(사업비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)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“갑”이 필요로 하는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탁금의 관리 및 사용) ①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지원받은 위탁금을 국가 등 다른 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(계좌)을 설정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법령의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“갑”이 지원한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, 사전에 “갑”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“을”은 위탁받은 사업비로 인하여 이자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“갑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의 사용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이를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도 및 감독) “갑”은 협약사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수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성실한 자세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변경) “갑”과 “을”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의 1/2 경과시점 이전에 “을”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“갑”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해지) ①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
 2.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“갑”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
 3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“갑”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“을”에게 이미 지급한 위탁금 및 이자수익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.

제9조(약정의 해석 및 변경) ① 이 협약은 “갑”과 “을”的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.

②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상호 의견이 있거나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경우에는 “갑”的 해석에 따른다.

제10조(권리·의무 승계의 제한) “을”은 “갑”的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.

제11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는 “갑”, “을”이 각 1부씩 보관하고, 협약서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 서명·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2019년 3월 8일

“갑” 경산시장

최영조 (인)

“을”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장

윤재웅 (인)